

# 『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』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

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0조에 따라 『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』 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 수행기관(학습지 전문업체)를 공개 모집합니다.

2023. 02. 06

## 의 왕 시 건 강 가 정 · 다 문 화 가 족 지 원 센 터 장

### 1. 사업개요

#### ○ 사업목적

-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1:1 수준별 방문학습 교육
- 한국어 학습능력 향상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

#### ○ 계약기간 : 계약일 ~ 2023. 12. 31.(개인당 10개월 이내)

#### ○ 사업대상 : 만4세~만11세 다문화가족 자녀 및 초등학교 재학 중인 중도입국 자녀

※ 저소득, 한부모, 다자녀, 장애인 등 우선 선발 지원

#### ○ 사업내용

- 한글, 국어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
- 방문교사 주 1회 방문, 15분 내외 수업 진행

#### ○ 사업량 : 약 00명(수업료 단가에 따라 사업량 변경가능)

#### ○ 사업비 : 3,150천원(도·시군 00%, 사업자 00%)

- 사업비(도·시군 부담분) 지급방식 : 후지급

## 2. 신청자격

-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글·국어 학습 지도능력을 갖추고, 현재 방문학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문 수행기관
- 저소득, 한부모, 다자녀, 장애인 등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우선 지원하는 공익적 사업임을 고려하여 학습비용은 1인 40,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
  - 사업비 부담내용

구분	부담 구분	부담비율	비고
주관	경기도, 시·군	00%	
수행	방문학습 수행기관	00%	
-	학습자	3,000원	

- 경기도의 넓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내 원활한 학습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기관
  - ※ 2개 이상 단체가 컨소시엄(공동)으로 신청 가능

## 3. 공고 및 신청서 접수

- 공고·접수기간 : 2023. 2. 06.(월) ~ 2023. 2. 13.(월) / 6일간
- 공고방법 : 의왕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10:00~18:00, 토, 일 제외)
  - ※ 접수처 : 의왕시 덕장로19 청계종합사회복지관 4층  
의왕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
- 제출서류
  - 사업신청서 (서식1)
  - 사업제안서(공문 포함) (서식2)
  - 사업 수행지점 및 인력현황 (서식3)
  - 기관·업체 소개서 (서식4)
  -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사항증명서, 법인(단체, 회사)설립허가증 중 해당되는 자료
  - 기타 [2개 이상 컨소시엄 응모서류] (서식5)
  - 2023년도 학습지 샘플

#### 4.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

- 심사기준 : 방문학습 운영, 프로그램의 다양성, 사업수행능력
- 선정방법
  -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
  - 심사방법
    -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을 선정
      - ※ 심사위원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득점자로 선정
    - 동점일 경우 심사항목 중 ①방문학습 운영 ②프로그램 우수성 ③사업수행능력 순으로 결정
  - 신청 기관이 1개일 경우, 평균 70점 이상일 때 선정
  -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: 일정 및 장소 별도 통보

#### 5. 선정결과 발표

- 발표(예정)일 : 2023. 2월 중
- 발표방법 : 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업체에 개별통지
  - ※ 미 선정업체 통보는 생략

#### 6. 기타사항

- 신청접수 현황, 심사내용 및 배점결과는 비공개
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접수 후 열·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
- 공고내용 미숙자·미확인,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
-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단된 경우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해당 항목 0점 처리
- 지정된 기일까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선정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.
- 사업제안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업체는 「경기도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함
- 협약체결시 사업비 총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

#### 7. 문의 : 의왕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(070-4047-1896)